

서울특별시

우100-744 서울 중구 테헤란로1가 31번지 / 전화 (02)750-8409 / 전송(02)750-8413
해당부서: 농수산유통과(중구 서소문동 서소문별관 5층) 담당자: 이만주

문서번호: 농유 51580-426

시행일자 1997. 2. 10

성유 (제 1 안)

수신 내무결재

참조



취급	시장	
보존	<i>2/10 2/14</i>	
농수산유통과장	전결	
가축위생계장	<i>32</i>	법무담당관 사필
기안	이만주	협조

제목 광견병 예방을 위한 방견단속 실시

'97년도 우리시 가축방역 사업의 일환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 및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견병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광견병 예방주사 실시 및 광견병 예방접종을 아니하고 거리를 배회하는 방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단속을 실시코자 합니다.

1. 광견병 예방주사

가. 계획두수 : 40,000두 (봄철 실시)

나. 실시기간 : '97. 3 ~ 4 월

다. 실시방법

— 약품구입 : 국비 83.6%, 지방비(구비) 16.4%

— 시술비 : 축주부담 (두당 2,000원)

2. 방견단속

가. 실시기간 : 년중

나. 실시방법 : 지역의 여진과 사육두수를 고려하여 자체계획을 수립, 실시

다. 방견단속 고시 : 떡붙임

떡붙임 고시문(안) 1부. 끝.

(제 2 안)

수신 받는곳 참조

참조 산업과장, 지역경제과장, 산업환경과장, 도시경제과장

제목 광전병 예방을 위한 방전단속 실시

1. '97년도 가축방역사업의 일환으로 광전병 예방을 위한 방전단속에 대하여
불임과 같이 고시하였으니 각 구에서는 관내 지역 여건 및 사육두수를 고려하여 자체
단속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기 바라며,

2. 필요시에는 경찰관서에 인력지원을 요청할것.

1) 축주지도

가. 광전병 예방주사를 빌히 접종토록 홍보하며

나. 집에서 기르는 개는 절대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조치하며 거리에
테리고 나올때는 반드시 입마개를 씌우고 목끈을 잡고 다니도록
하여 뜻하지 않은 사고가 없도록 지도·계몽할 것.

2) 단속실적보고 : 매 분기별 단속실적을 분기말 익월 10일까지 아래 양식에
의거 보고

방전단속 계획두수	포박두수	조 치 내 용					포박두수 누계	비 고
		인 도	인도 및 고발	박 살	기 타	누 계		

※ 조치내용중 기타란은 학술용제공등 상세히 적을것

덧붙임 고시문 1부. 끝.

받는곳 서구 1~25

(제 3 안)

수신 농림수산부장관

참조 가축위생과장

제목 '97년도 광전병 예방을 위한 방전단속 실시 보고

'97년도 우리시 가축방역사업 계획의 일환으로 불임과 같이 광전병 예방을
위한 방전단속을 고시하였기 보고합니다.

덧붙임 고시문 1부. 끝.

(제 4 안)

수신 받는곳 참조

제목 '97년도 광견병 예방을 위한 방견단속 실시

'97년도 우리시 가축방역사업 계획의 일환으로 불임과 같이 광견병 예방을 위한 방견단속 고시를 하였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업무에 참고하기 바람)

넷불임 고시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받는곳 보건환경연구원장(축산물부장), 서울시수의사회장

(제 5 안)

수신 공보담당관

제목 '97년도 광견병 예방을 위한 방견단속 실시

'97년도 우리시 가축방역사업 계획의 일환으로 광견병 예방을 위하여 불임과 같이 방견단속 고시를 하였으니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농 내용물을 배포해주시기 바랍니다.

넷불임 고시문 1부. 끝.

농 수 산 유통 과 장

고 시(안)

서울특별시고시 제1997- 호

고시일자	1997. 2. 19.	제	500	호
담당자	민생과	감	김	부 담당과
한	한	한	한	한

광견병 예방을 위한 방견단속 실시

기축진염병예방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견병 예방주사를 마치지 아니한 개가 옥외에서 배회하는 것을 단속하고자 같은법시행규칙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이

1997년 2월 1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목 적 : 광견병 발생의 미연 방지
2. 지 역 : 서울특별시 전역
3. 기 간 : 1997. 3. 11. ~ 1998. 3. 10
4. 방 법 : 포박하여 일정한 장소에 억류
5. 대 상 : 옥외에서 배회하는 개
6. 기타사항:

가. 억류된 개는 자치구별로 억류상황을 공고

나. 억류된 개를 되돌려 받고자하는 개주인은 억류공고후 10일이내에 광견병 예방접종증을 지참 인수하여야

다. 억류공고후 10일이내에 반환요구가 없는 개는 가축방역관의 지시에 의하여 학술용 제공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7. 문 의 처

서울특별시 행정부 산업과(지역경제과, 산업환경과, 도시경제과) 및 시 농수산유통과

(전 750-8409 ~ 10)

문의: